

2026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끌장

법령특강

최신 개정·기출 반영
시험 직전 필수 법령 정리

싹맨™ 김진원 교수

이 자료로 법령에서
점수를 지킨다



프라임법학원

김진원 사회복지사1급

primeedunet.com

싹맨™ 김진원 교수

밀착관리 • 질의응답 • 정보공유

<https://cafe.naver.com/tonghapwelfare>

<https://youtube.com/김진원사회복지학>

band.us/@oikos

☎ 전화상담 : 010 - 3182 - 1385

〈카카오톡 ID : kjwwelfare〉

시험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신 기준 정리본

본 자료는 공공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 기준!!
시험에 출제되는 것과 관련된
최신 법률 개정 및 정책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었으며, 그로 인해 법률 조문 중 ① 여성가족부령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정되었다.

2

출제경향분석

사회복지법률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출제빈도								
		15회 '17	16회 '18	17회 '19	18회 '20	19회 '21	20회 '22	21회 '23	22회 '24	23회 '25
총 론		5	3	3(1)	3	5	3	4	3	4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4	4	3	2	2	3	3	3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1	2	1	2	1	2	1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1	1	2	2	1	3	2	2
	의료급여법	1	1	×	×	×	1	×	1	1
	긴급복지지원법	×	×	1	1	×	1	×	×	×
	기초연금법	1	1	1	1	1	1	1	1	1
	장애인연금법	×	×	정(1)	×	정(1)	정(1)	정(1)	×	×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1	1	1	×	1	1	×	1	×
	국민건강보험법	×	1	1	1	1	1	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1	1	1	×	1	1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1	1	1	1	1	1	1	1
	고용보험법	×	1	1	1	1	1	1	2	1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3	4	3	3	3	3	4	4	3
	아동복지법	×	1	1	1	(2)	1	2	1	1
	노인복지법	1	1	×	1	1(2)	1	1	1	1
	장애인복지법	1	1	1	1	(1)	1	1	1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	1	×	(2)	1	1	1	1
	합 계	24	20	23	19(1)	19(2)	19(5)	22	22	24
	◎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법령 한계선 ◎									
	영유아보육법	×	×	×	×	×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1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1	1	1	1	1	1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	×	×	×	×	1	1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	1	1	1	1	1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1	1	1	1	1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1	1	1	(1)	1	1	1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1	1	1	1	1	1	1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1	1	1	1	1	1	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1	1	1	1	1	1	1	1
	건강가정기본법	1	1	1	1	1	1	1	1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	1	1	1	1	1	1	1	1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1	1	1	1	1	1	1	1
	아동수당법	1	1	1	1	1	1	1	1	1
판례		1	1	1	1	1	1	1	1	1

3

시험 출제조문 개정 여부

사회복지법률		조문 개정 여부		
		개정	시험에 출제된 조문 개정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0	0	직접적 관계 없음 ²⁾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의료급여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0	0	직접적 관계 없음 ³⁾
	기초연금법	0	X	
	장애인연금법	0	X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0	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	0	직접적 관계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	X	확인할 내용 있음
	고용보험법	0	X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아동복지법	0	0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있음
	노인복지법	0	0	직접적 관계 없음
	장애인복지법	0	0	직접적 관계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0	0	확인할 내용 있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영유아보육법	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0	X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0	X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0	X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0	0	입양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0	X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X		
	다문화가족지원법	0	X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X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X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확인할 내용 있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0	X	직접적 관계 없음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관련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X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0	X	
아동수당법		X		

- 2)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2항 제17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3)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항 제7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4

개정 조문 비교표

01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⑯⑰]	④ <u>국가는</u>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u>격년으로</u>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제〉	제30조 의3 〈신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⑯⑰]	<p>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u>격년으로 3년마다</u>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정·개정이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대한 근거 명확히 함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⑯⑰⑯ ⑯⑰⑯]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p>		
제정·개정이유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의2	기준 중위소득 의 산정 [④]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구별로 산정한다.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구별로 산정한다.	
제정·개정이유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①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책론②]

(1)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8%

↔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4)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항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2026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1) 적용 :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폐지

① **부양비** :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

→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간주 부양비로도 불립

② **부양비 폐지 효과** :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기 존

-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 ('26)
-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67만 원
+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의 10%인 36만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 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 선

-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 ('26)
-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67만 원
+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67만 원으로
선정 기준 이하 → 수급자 선정

(2)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03 | 의료급여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수급권자 [②]	<p>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p>	<p>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u>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u>」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p>
제정·개정이유		타법개정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04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긴급지원 의 기간 등 [⑪]	<p>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생계지원)·다목(주거지원)·라목(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바목(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u>1개월간</u>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생계지원)에 따른 <u>긴급지원은 3개월간</u> 같은 호 다목(주거지원)·라목(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바목(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u>1개월간</u>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개정 2023. 6. 13., 시행 2023. 12. 14.〉</p>
제정·개정이유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지원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최대 지원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3개월	3개월 범위내 연장	6회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의료지원	1회		1회 추가연장
	교육지원	1회(분기)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그밖의 지원	1회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회수제한없음

OX [법제론⑪]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x)

OX [정책론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6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2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o)

05 | 국민연금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군 복무기간 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정책론 ⑯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6개월을</u>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 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정책론 ⑯⑰]	<p>① <u>2 이상의 자녀</u>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u>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1. <u>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u></p> <p>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u>둘째</u>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u>12개월</u>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p>	<p>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단서 삭제></p> <p>1. <u>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u></p> <p>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u>첫째 및 둘째</u>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u>24개월</u>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p>
제정·개정이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림	

[정책론⑯]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책론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정책론⑯]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x)

[정책론⑰] 자녀가 두 명인 경우 24개월을 추가산입한다.(○)

① 보험료율 인상 : 2026년 보험료율 9.5%

(1)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

(2) 따라서, 2025년 보험료율 9%(2025년 보험료율)에 +0.5%p 인상되어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인상

② 소득대체율 인상 : 2026년 소득대체율 43% [정책론⑩]

(1) 소득대체율 :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함

(2)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이었음

→ 따라서, 2025년 소득대체율 41.5%, 2026년 소득대체율은 40.5%가 될 예정이었던 것임

(3)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 것임

[정책론⑩]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이다.(x)

↳ 2026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3%이다.(○)

0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의2 <신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p>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 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u>매년 4월</u> <u>28일</u>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 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 로 한다.</p> <p>〈신설 2024. 10. 22., 시행 2025. 1. 1.〉</p> <p>암기법</p> <p>사(4)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보상금 <u>이빠이(28)</u>주자! 일본어 いっぽい(이빠이)는 가득을 의미.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빠이 주세요'는 '많이 달라'는 의미이다.</p>
제정·개정이유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		

07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정의 [⑬⑭⑭]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 편. (생략)</p> <p>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 편. (현행과 같음)</p> <p>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의2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	<p>「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p> <p>1. (생략)</p> <p>2. ~ 4. (생략)</p>	<p>「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치매관리법」</p>

제11조 의2	사회 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②②]	<p>① ~ ⑦ (생략)</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p>
제11조 의2	사회복지 사의 결격사유 [⑦②]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p> <p>3. ~ 5. (생략)</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p> <p>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3. ~ 5. (현행과 같음)</p>

08 | 아동복지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 <신설>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아동학대의 재발 등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OX [법제론②]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O)

09 | 노인복지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의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7. (생략)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 1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 7. (현행과 같음)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 16. (현행과 같음)
제정·개정이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OX [법제론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O)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의2	노인일자 리전담기 관의 설치·운 영 등 [⑪⑫⑬]	<p>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인인력개발기관</u>: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u>노인일자리지원기관</u>: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u>노인취업알선기관</u>: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p><개정 2023. 10. 30., 시행 2024. 11. 1.></p>
제23조 의3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p><삭제></p> <p><개정 2023. 10. 30., 시행 2024. 11. 1.></p>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⑫⑬⑯, 정책론 ⑰]	<p>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생 략) 	<p>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생 략) <p><개정 2023. 10. 30., 시행 2024. 11. 1.></p>
제정·개정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 및 개정됨.	

[⑫] 노인복지법의 내용 :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x)

10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가족지원 서비스 [⑨]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1. ~ 4. (생 략) 5. 인지청구 및 <u>자녀양육비 청구</u>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6. (생 략)</p>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 5. 인지청구 및 <u>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u>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현행과 같음)</p>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 (1)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정

11 | 영유아보육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보육정책 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보건복지부</u> 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시행 2024. 6. 27.〉
제9조 보육 실태조사 [⑧]	① <u>보건복지부장관</u> 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시행 2024. 6. 27.〉
제정·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행⑨]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 보육서비스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관장한다.(x)

[행⑩]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요 구성? 보육서비스(어린이집)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이용자(x)

1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⑦]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p>〈신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p>〈개정 2024. 10. 16., 시행 2024. 10. 16.〉</p>
제정·개정이유		<p>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p>	

이 조문은 사회복지법제론 2019년 제17회 시험에서 1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7회

- ①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④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① ⑦, ②
 ③ ⑦, ④, ②
 ⑤ ⑦, ②, ③, ④

- ② ④, ②
 ④ ④, ②, ④

정답 ⑤

13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자원봉사 진흥 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관계 <u>중앙행정기관</u>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소속으로 관계 <u>공무원</u>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8. 16., 시행 2024. 2. 17.>
제정·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위함.

14 | 아동수당법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아동수당 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정책론 ⑯⑯ ⑰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9. 1. 15.> ③ 삭제 <2019. 1. 15.> 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u>50만원</u> 을 추가로 지급한다.	① 아동수당은 <u>8세 미만</u> 의 아동에게 <u>매월 10만원</u> 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9. 1. 15.> ③ 삭제 <2019. 1. 15.> 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u>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3. 6. 13., 시행 2023. 9. 14.>

동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세 미만의 아동 : 매월 100만원
-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 [정책론⑯]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 [정책론⑯]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 – 아동수당(×)
- [정책론⑰]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 [정책론⑰]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정책론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 – 아동수당(○)

15 | 국민건강보험법 :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

① 제도 개요

- ①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②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제50조	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③ 국제동향 : OECD 4개국(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중

② 제도의 기능

- ①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②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③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④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③ 시범사업 단계별 대상지역

- ①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②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③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④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24~2028)」(보건복지부, 2024.2.2.)
 - 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시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상병수당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룸**
 - ② (現) 상병수당 1.2단계 시범사업 시행(10개 지역) → (改) 상병수당 3단계시범사업('24~) 및 통합 시범사업('25~) 후 평기를 거쳐 본사업 제도화 검토('27~)
 - ③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시범사업 사업을 연장 운영해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발의만 되고 폐기되어 입법을 통한 상병수당 도입도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

- [정책론⑨]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상병수당**
- [정책론⑩]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 : 질병치료 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자급되고 있지 않다.(○)
- [정책론⑪]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 :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x)
- [정책론⑫]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 :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x)
- [정책론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 : 상병수당(○)
- [정책론⑭]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x)
- [법제론⑮]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 :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018년 제16회 시험에서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었음에도’ 지문에서 “시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틀린 문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시범사업과 전면 시행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출제원칙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의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며, 단순히 “시행되고 있다”라고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6회

- ①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②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⑤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하였다.

 정답: ③, 최종정답: ③, ⑤

16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획재정부를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⁴⁾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였다.

①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	설립인가 등 [지사록②, 정책론⑭]	<p>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u>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u>를 받아야 한다.</p>	<p>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u>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u>를 받아야 한다.</p>
제정·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위함.	

[지사록②]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책론⑭]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x)

②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의 주무 부처는 재정경제부

- ① 근로장려세제가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주무 부처는 재정경제부이다.
- ② 근로장려금의 신청 접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0조(재정경제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정책론②]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 :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x)

[정책론⑭]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 : 근로장려금 신청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x)

4)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싹하고 정리, 싹하고 합격!

싹맨™이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으로 가자!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증명됐습니다.